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지능정보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1]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의 범위로 규정

나.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탄소중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2]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로 규정

다.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함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중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 지능정보기술의 범위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술

제3조의5(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중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 녹색기술의 범위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술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재편계획 심의를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공동행위를 사업재편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 심의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행위의 필요성 또는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행위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의 범위

분 야	기 술
3D프린팅	3D 디자인 변환, 3D 스캐닝, 3D 디자인 SW 등을 활용하여 제조부품을 단순화하거나 공정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품설계 및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모델링(SW) 기술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1) 제조공정 모니터링, 제품 작동상황 판단·안전관리 등을 위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개체나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연결하는 실시간 데이터 연결 기술 2) 현실정보를 가상화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등 가상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기술 3) 현실의 상황·조건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적으로 모델링된 가상공간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현상모사(Simulation) 기술 4) 3D Visualization 등 현실 가시화 기술
AR/VR/MR /XR	1)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특징과 용도에 따라 현실과 가상정보(콘텐츠)를 융합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는 증강현실(AR) 기술 2)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서라운드 사운드 등으로 완전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가상현실(VR) 기술 3) 증강현실(AR) 기술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융합한 혼합현실(MR) 기술 4)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혼합현실(XR) 기술
설계·공정 자동화	1)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 등을 수행하는 SW를 구현하여 제품의 계획/설계/생산의 제어·관리·운용을 자동화하는 산업 자동화 기술 2)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판단구현 능력 등을 갖춘 SW로봇이 대신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5G/6G 네트워크	5G나 6G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넓어진 100GHz 대역 이상의 활동대역, 수십 GHz에 달하는 대역폭, 최대 1Tbps에 이르는 전송속도, 0.1ms 이하의 극히 적은 무선구간 지연 등으로 획기적 데이터 전송속도, 서비스 거리, 신뢰성 등을 제공하는 기술
엣지컴퓨팅	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나 그 근처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별표 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의 범위

분 야	기 술
철 강	1) 전기로 활용 제철 공정기술 : 수소환원철 또는 직접환원철을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전환을 통해 CO ₂ 를 저감할 수 있는 공정·설비 기술
	2) 전기로 전력원단위 저감기술 : 전기로 조업시간단축, 전력에너지 투입효율 향상을 통한 전력에너지 사용 최소화 기술 및 전기로 화학에너지 공급 설비, 연소 제어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스크랩 용해 연소효율 극대화 기술
	3) 철스크랩 판정기술 : 철스크랩 활용 및 전기로 공정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영상분석 기술 등을 적용하여 철스크랩 등급을 정확하게 판정·분류하는 기술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나프타 분해공정 기술 :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시멘트	혼합재 증대 저탄소 시멘트 제조 및 생산 기술 :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추가 확대를 위한 고기능성 클링커 기술 및 다양한 혼합재(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포졸란, 석회석, 시멘트 킬른 더스트, 괴재슬래그, 전로슬래그, 바텀애시)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 가능한 혼합시멘트 생산기술
조 선	선박 풍력추진 로터 세일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마그누스 효과에 따라 회전하는 로터 세일을 이용해서 돛의 원리로 풍력을 선박의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섬 유	1)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섬유소재 제조 기술: 혼합재질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해중합, 정제·분리·원료(모노머) 회수 및 재중합, 방사기술
	2)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활용한 석유계 화학섬유 대체용 바이오 섬유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를 출발물질로 하여 단량체를 제조하고 일부 혹은 전량 사용하여 합성된 고분자 또는 바이오매스 유래 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조된 석유계 화학섬유 대체용 바이오섬유 제조/공정 기술
수 소	수소를 직주입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10 kW 이상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발전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소재·부품 제조 기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4(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u> <u>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u> <u>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 서비</u> <u>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을 전</u> <u>환하는 행위를 말한다.</u>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u>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신성장</u> <u>· 원천기술 중 지능정보에 해</u> <u>당하는 기술</u>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u>조제4호 지능정보기술의 범위</u> <u>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별표 1</u> <u>에 따른 기술</u>
<u><신 설></u>	<u>제3조의5(탄소중립활동의 범위)</u> <u>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u> <u>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u> <u>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u> <u>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u>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u>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신성장</u> <u>· 원천기술 중 탄소중립에 해</u> <u>당하는 기술</u>

<신 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 녹색기술의 범위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술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재편계획 심의를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공동행위를 사업재편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 심의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전달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와</u> 같다.	<u>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행위의 필요성 또는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행위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24조(과태료) ----- ----- <u>별표 3과</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연 락 처	(044) 203 - 4231